

제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83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권준혁,부성혁,고경준, 최민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1. 27

판결 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사이에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1. 체결한 증여 계약은 8, 969, 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 969, 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권리원고는 2016 . 12. 20. B 와 사이에 1, 14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를 이를 기초로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는 2018. 8. 24. 부터 위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11. 28. 7, 942, 513원을 C 에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의 B 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9 . 11. 12. 기준 대지급금 265,567원, 손해금 761,610원을 포함하여 8,969,69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3 . 10. 2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8. 7. 31.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2018. 8. 2.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77372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 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2019. 11. 18. 매각이 허가되었다.

라. B와 피고의 협의이혼

피고는 2009 . 10. 27. B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었는데, 2018 . 11.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이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뒤 공증을 받았다.

1. 피고와 B는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 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나. 피고와 B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관련하여 피고는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다. 피고는 B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으로서 매월 2째, 4째 토요일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면접하도록 협조하고, 이외에는 서로 협의하여 면접 교섭할 수 있다(자녀들은 B가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B가 귀가시키기로 한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 가. 피고와 B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고, 피고가 B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으면 피고와 B는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집안 살림살이 등 일체에 대하여 B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의 소유로 한다).
 - 나.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B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1-2, 2-1,2-2, 3-1,3-2, 4, 5, 6,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B가 채무 초과 인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이 사건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이 사건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 2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 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은 아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 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의 혼인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할 때 이를 취득 또는 유지하는 데에 피고가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에 두 자녀를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종국적으로 피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그 채권 최고액이 122, 400, 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132, 150, 000원에 매각되어 결국 증여로 인해 피고가 받은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대한 재산 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별지